

이경은. 2019. “아동의 권리는 동등한 인권인가?” 『인권연구』 2(2): 121-141.
Lee, Kyungeun. 2019. “Are Children’s Rights Equal Rights?”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2(2): 121-141.

[현장논단]

아동의 권리는 동등한 인권인가?

: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듣는 제도화된 차별, 한국의 국제입양

이 경 은*

한글초록

국제입양은 전세계적으로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를 야기해 왔고, 이에 대해 여러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협약이 성립되었다. 한국이 이 문제의 발생지로 주목받아 왔으나, 정작 한국인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반면, 20만명에 달하는 한국 출신 국제입양인 당사자와 입양가족이 존재하는 북미와 서유럽에서는 ‘Korean adoption’에 대한 연구, 보도, 저서가 수없이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1990년대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장단기로 머물고 있다. 언어장벽과 이질적인 문화적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입양정의’ (adoption justice)를 위한 당사자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이들의 운동력은 많이 감소했다. 성과 없는 운동에 대한 피로감 혹은 외국에서 사는 이방인으로서의 무력감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국제입양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각과 욕구를 가진 건 아니기에 이에 따른 운동 방향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2012년 역사적 법개정을 이루기도 했고, 입양인을 마냥 성공신화로만 미화하던 미디어와 여론에 다른 시각의 담론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이 글은 2019년에 발간한 탐사보도 기자와 연구자와 입양인 당사자가 한국 국제입양의 역사를 함께 파헤친 저서 『아이들 파는 나라』의 내용을 중심으로 입양인 당사자들이 말하는 국제입양의 이야기를 담았다.

주제어: 국제입양, 입양특례법, 아동권리,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법학 박사(국제법)

ISSN 2635-4632

www.kci.go.kr

— 목 차 —

- I. 서론
- II. 국제입양 당사자들이 말하는 아동의 권리
- III. 평행이론으로 본 영화 ‘스포트라이트’와 한국의 국제입양 이슈화 과정
- IV. 우리의 현실
- V. 당사자들이 돌아온다.

I. 서론

한국의 국제입양의 실태라는 불편하고 침예한 인권 이슈에 대해서, 탐사기자, 전문가, 그리고 입양인 당사자가 함께 쓰는 책 『아이들 파는 나라』를 출간했다. 출판사에서는 나를 ‘한국의 국제입양 문제에 대한 독보적 연구자’라고 표현했다. 어찌다가 20년 넘게 공무원을 한 사람에게 이런 소개를 붙일 수 있었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67년이 넘게 한해도 빠짐없이 벌어진 국가주도의 인권침해를 제대로 연구한 전문가가 이전에 없었기 때문이다. 법학에서도, 사회복지학에서도, 인권 영역에서도 배제된 채, 우리 사회와 역사에 섬처럼 떠 있었던 입양기관의 실태와 거기에 전적으로 운명이 맡겨진 아기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헤친 책이다. 한국 출신 국제입양인 당사자들은 북미와 서유럽, 호주 등에 약 20만 명에 이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에서 국제입양을 위해 태어난 나라를 떠난 아동의 규모를 약 50만명으로 추산한다. 그 중 20만명이 한국 출신이라고 본다. 그 기간 동안 주요 국제입양 송출국은 100여개국에 이른다. 그 중에서 한국은 아직까지 세계 최장 최대 아동 송출국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II. 국제입양 당사자들이 말하는 아동의 권리

“비행기를 탈 때마다 내 안에서 그 아기가 다시 살아온다.”

한 국제입양인 인권운동가가 인터넷 매체에 쓴 글에서 읽고, 처음으로 당사자의 입장에서 국제입양이 왜 인권침해인지를 깨달았다. 그 말의 전후 맥락은 이렇다. 이 문장의 필자는 1970년대 서울에서 태어나 아기 때 미국으로 입양되어 성인이 된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입양정의’ (adoption justice) 운동을 하는 단체 대표였다. 그가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 보고서 심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아동권리의 법제 상황은 여전히 인권침해적이라고 알리기 위해 국제선 비행기를 타기 직전의 자기의 심리 상태를 묘사한 글이다.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아직도 그 옛날 스스로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친엄마에게서 떼어내어 비행기에 강제로 태워진 그 때로 돌아간다고 한다. 그 무기력과 분노를 떨쳐내기 위해 자기 안에 있는 그 아기를 한참을 달래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얘기해 주어야 비로소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고 한다.

영화 ‘주전장’은 일본계 미국인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제를 치열하게 고발한다. ‘sex slavery’라는 용어에 특히 민감한 극우 일본인들은 돈도 받았고 밖으로 나가서 술도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 여성들이 노예라고 할 수 있냐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인권 활동가들은 ‘노예제’의 근본은 인간이 인권의 주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해 좌우되는 ‘대상화’의 상태라고 설명한다. 미국 영화에서 묘사되는 흑인 노예들의 모습인 목과 발에 쇠고랑을 찬 상태가 노예제의 본질이 아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거래될 수 있는 대상, 즉 물건처럼 취급되고 그런 거래와 이동이 가능하냐가 핵심이다. 현대 국제인권법에서는 인신매매, trafficking을 절대

금지하고, 모든 체약국의 형법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이 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논의를 노예제와 trafficking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인간의 아동기는 그 생애적 특성상 극도로 취약하고, 이러한 처분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엔의 인권협약에서는 아동에 대해서는 ‘착취’의 목적이 없이 ‘국제입양’을 위한 경우에도 trafficking이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런 범죄를 엄히 처벌할 수 있도록 각국 형법을 보완하라고 국제법에 정하고 있다.

아동의 입양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공적 아동보호 정책이 아니라 민간기관에 의한 산업(business)의 단계로 넘어간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아동을 국제입양을 위해 송출하는 나라라는 것은 국내에 아동보호체계가 없거나 부실하다는 의미이다. 나라의 공적 체계가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사적 기관을 통해 외국의 양부모에게 맡기는 방안을 선택한 결과이다. 이런 절차를 가능케 해주는 법제가 없다면 아동의 국제입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인간이 국경을 넘는다는 의미는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거쳤다는 의미이다. 입양과 이민은 서로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이다. 입양은 가족법에 의한 사적 관계의 성립이지만, 이민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이다. 떠나는 나라와 받는 나라 양자 간의 법적 요건과 절차가 다 충족되어야 한다. 국제입양 대상이 되는 영유아가 단독으로 그런 의사 결정을 했을 리는 만무하다. 아동이 태어난 친부모와 그 가정, 그리고 태어나서 그 국적을 가지게 된 나라, 아동을 입양하겠다는 외국의 양부모, 그 아동이 살아가고 국적을 가지게 될 나라와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하는 절차이다. 절차 자체도 복잡하고 길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일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위험은 trafficking이다. 다수의 국제인권협약에서 이 절차를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나라에서는 국제

입양 송출이라는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은 1950년대부터 자국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송출하였는지, 매년 정확한 통계를 집계해 온 유일한 나라입니다.”

2013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를 방문했을 때, 이 기관의 법률자문관이 당시 한국 정부의 당국자였던 나에게 해준 말이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국제사법 (private international law)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이다. 사적관계를 국제규범으로 규율하는 많은 협약들이 만들어 졌는데, 그 중 최대 체결국을 가진 협약이 1993『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다. 이 기구에서 전세계적 국제입양에 의한 아동의 이주 현황을 수령국과 송출국별로 상세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각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통계이다. 주로 아동이 입양되는 수령국의 출입국 기록과 비자발급 통계로 수집된다. 북미, 유럽, 호주 등 주요 수령국들은 이러한 절차가 엄격하게 규율되고, 정확한 통계수집이 가능하지만, 송출국들은 대부분 자국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국가들이라 보니, 이러한 통계관리 기능을 해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령국 통계로부터 어느 나라에서 송출되었는지까지 파악된다. 그러다 보니 한국이 눈에 띌 수밖에 없다. 이 숫자를 스스로 집계해 내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니 말이다. 한국은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방치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동을 송출하는 정책을 선택한 나라이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소수의 입양기관에서만 국제입양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독점적 허가권을 주었고, 입양기관의 사업실적 차원에서 그 숫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고받아 왔다.

한국의 입양법은 살아있는 화석과 같다. 한국전쟁 중에 마구잡이로 만들어진 『고아입양특례법』은 아동을 서류상 ‘고아’로 만들어 그 신병

만 외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했다. 이 법제는 아직도 그 취지를 유지한 채 존재하고 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그 나라의 법제에 의해 마치 공기처럼 지배받는다. 아기들을 종이박스에 넣어서 수백명씩 전세기로 이동시켜도, 쌍둥이가 미국과 유럽으로 입양되어 성인이 되어 SNS를 통해 닳은 외모를 보고 관계를 확인했다는 이야기도, 수도 없이 들려오는 출생기록이 없이 부모를 찾는다는 국제입양인들을 호소도, 길잃은 아기를 외국으로 입양시켜서 수십년간 찾아온 부모가 실종아동 신고 DNA 검사를 통해 상봉한다는 이야기도, 모두 미담이 된다. 이는 공적 아동보호체계가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범죄의 증거이고, 일대 스캔들이 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한국의 현행법 뿐 아니라, 당시 법에 의해서도 불법이고, 범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부조리를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북미와 유럽으로 입양되어 그 나라 법제 하에 살아온 한국 출신 입양인들이었다. 아동의 권리(rights of the child)는 아동기의 권리 (rights of the childhood)라고도 불린다. 아동기를 건너뛰고 성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동’이라고 하는 구별되는 인간 집단이 존재한다기보다는,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초기에 적용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는 보편적이고, 그 시기에 보장되지 않으면 이후에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는 특정 권리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국가에 등록되고 국적을 가질 권리, 친부모를 알권리,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 등이다. 등록되지 않은 영유아기의 인간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협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세계적으로 아동권리의 참혹한 유린 상황은 성인이 된 당사자의 문제제기에서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 국제입양의 경우도 그렇다. 한국이 국제입양의 발생지이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아동을 송출한 국가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출신 국제입양인들이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 국가별로 자조단체를 만들고, 전세계적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하

였다. 이들은 매년 대륙을 돌면서 회합을 가지고 있다. 3년 주기로 미주, 유럽, 한국을 돌아가면서 모인다.

스웨덴의 입양인 단체는 한국이 자신들을 전자제품 팔듯이 외국에 수출했다고 증언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한국의 국제입양 관행을 가지고 가서, 이를 인권 사안으로 대두시킨 사람들도 한국 출신 입양인들이었다. 이들은 한국의 인권침해적 출생신고 제도를 유엔에서 의제화한 최초의 그룹이었다. 국제입양 과정에서 한국의 출생신고 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서 한국 법제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왜 유엔규범에 규정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라고 할 수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 법무부의 답변을 보면, 유엔 인권 기구들의 질문에 동문서답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반면 입양인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국가의 법제와 대비해보았을 때 그 차이와 문제를 알 수 있었다. 바로 당사자들이기에 이런 부조리를 인지할 수 있었다. 미혼모의 아동을 집단적으로 해외로 송출한 국가의 제도적 차별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도 이들도다. 한국사회에서 무더진 제도화된 차별과 편견을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법제의 변화를 요구해 왔다.

Ⅲ. 평행이론으로 본 영화 ‘스포트라이트’와 한국의 국제입양 이슈화 과정

1. 외부인의 등장으로 시스템의 문제를 보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 아이를 학대하는데도 온 마을이 필요하네.”

제88회 아카데미 작품상은 2015년 개봉한 영화 ‘스포트라이트’에

돌아갔다. 보스턴글로브지의 동명의 탐사보도팀의 실화를 다루었다. 미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막강한 가톨릭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보스턴 교구 사제들에 의해 수십년간 자행되고 조직적으로 은폐되었던 아동 성폭력 사건을 파헤쳐 전세계적 파장과 교황청 차원의 대응을 이끌어 낸 언론보도 이야기다.

이 영화는 보스턴글로브지 기자들을 그렇다고 영웅화하지는 않는다. 그들도 추악한 범죄로 인한 아동인권 침해를 수십년간 묵인하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이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직면하기로 결심하는 데는 보스턴에서 태어나고 자란 지역 토박이들이 아니라, 외지인 남부 출신 편집장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토착세력의 회유와 협박이 통하지 않는 외부인. 그는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한 번의 불행한 사고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이며, 가톨릭 교구가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파리는 지시를 한다.

나는 국제인권법을 10년간 공부해 온 학자이자, 15년차 공무원으로 살다가, 어찌하여 보건복지부로 편입되어 국제입양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기존에 수십년 간 이어진 정부 담당자와 입양기관과의 토착적 관계를 알지도 이해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이었다. 이 문제는 마치 수십년간 카펫 밑으로 계속 밀어넣기만 해서, 그 아래 상태가 어떤지 아무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 출생신고도 없이 입양기관에 맡겨진 아기들은 세면대에서 목욕시키다가 떨어뜨려 죽기도 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호받다가 사망한 사고가 얼마나 있었는지 제대로 파악되지도 못했다. 출생신고가 없었으니 사망신고도 없다. 이 세상에 인간이 왔다 갔는데 어떠한 기록도 흔적도 없다. 관행적으로 출생신고 없이 보호받는 아기가 수천 명이라는 말을 듣고, 정말 오싹해지고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렀다. 그런데 이 사실이 별로 문제시 되지 않았다. 수기로 소위 G코드라는 것을 발급해서 아기 한명당 생계비를 주는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 애들은 다 우리

‘것’인데 뭐 정부가 어디로 입양을 보내라 말라 하느냐고 큰소리를 치는 입양기관 책임자도 있었다. 정부가 주는 돈은 애들 분유값도 안된다고 인터넷 포털에 애들 얼굴 보이면서 기부해 달라는 광고를 하기도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당국자로서 한없이 무력해지는 현실 앞에서 원인을 파보았다. 결국은 법과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 법대에서 10년 넘게 국제법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도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는 건 인생 계획에 없었다. 그냥 그 공부라도 해야 일상을 살아낼 수 있어서 거기 있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이 세상에 나 밖에 아는 사람이 없겠다, 내가 아니면 쓸 사람이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권리의 국제법적 보호’라는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았다.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의 뿌리를 알 권리는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인권이다. 한국 출신 국제입양인들에게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박탈해 버린 인권이다.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적어도 그들이 입양되었을 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었다. 학위를 위한 논문이 아니라, 이 권리의 당사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글이다.

미국에서 입양정의 운동을 하는 한 미국인 입양부모를 만났다. 한국에서 2명의 자녀를 입양한 경험이 있기에 한국의 입양기관의 행태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리고 미국 정부와 사회가 어떻게 협력했는지도. 지금 그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다. 그녀는 한국말을 배우려고 노력한다. 그러면서 내 논문을 받아들고는 내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그 안에서 *injustice* (불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게 바로 당신이다.”

2. “나일 수도 있었다”

스포츠라이트의 팀장 로비는 편집장과 달리 보스턴 토박이다. 이 취재가 일으킬 파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주변의 압력도 거셴다. 더구나 영화에서 그가 바로 성인이 된 아동 성폭력 피해 당사자들이 보내온 증거와 호소를 짚막한 단편 기사로 끝내버린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들춰낸다. 이 사람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절절하게 느끼게 되는 계기는 바로 자신이 다녔던 고등학교 후배의 증언이다. 보스턴의 유명 가톨릭 사립학교 학생으로 스포츠단을 맡고 있는 스승이자 사제였던 사람에게 성폭행 당한 후배. 그 학교 스포츠부 소속이었던 로비의 깨달음은,

‘나일 수도 있었다.’

입양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70년대 서울 중심부, 특히 혼혈 아동이 많이 거주했던 용산 지역과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입양기관 사람들의 손을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나와 같은 하늘 아래, 너무나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 그 시대 부모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누구나 가난했다. 그리고 고아원이 너무 익숙했다. 혼혈 아동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입양대상으로 모집했고, 그 와중에 마주치게 되는 아동들을 미국에 보내준다고 데려가는 일은 흔했다고 한다.

3. 임계점에 다다른 아이들의 피와 눈물

나는 2002년 보스턴이 이 기사로 도배되고 있을 때, 국제인권법을 공부하는 유학생으로서 거기 있었다. 이 보도는 보스턴 지역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충격을 주었고, 가해자 신부의 얼굴을 매일 TV에서 수도 없이 봐야했다. 허나 진짜 충격적인 모습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피해자들의 증언 장면이다. 당시 중년에 이른 엄청난 체구의 백인 남성들이, 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때 그 힘없는 아이로 되돌아가 자기의 피해를 증언했다. 실제로 자신의 얼굴을 언론에 노출시키는 피해자는 많지 않다. 영화에서도 이들은 자신을 성폭행한 신부가 집에 찾아오면, 어머니는 쿠키를 내왔다고 증언하였다.

20만명의 아이들이 전세계 공항에 뿌린 눈물과 양부모에 의해 학대당하고 죽어간 아이들의 피가 얼마나 쌓여야 이들에게 진실과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른다. 『파리의 택시 운전자』라는 책을 보면, 저자가 파리에서 만난 한인 입양인 형제의 이야기가 나온다. 3살, 5살 형제가 파리 공항에 도착하자, 그 긴 여행으로 기진맥진해진 이 아이들 앞에, 언어도 모습도 공기마저 생경한 그 공포와 불안 속에서, 두 가정의 나타나 형제를 각기 다른 가정에서 데리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 때, 이 다섯 살짜리가 세 살짜리를 잡고, 공항이 떠나가라 울면서 절대 놓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절절한 모습에 프랑스 양부모 두 가정은 합의해서, 한 가정에서 둘을 다 데려다 키웠다고 한다. 부모도 가족도 나라도 지키지 못한 세 살짜리를 다섯 살짜리가 지켜냈고, 그 이방의 삶에 형제는 둘도 없는 의지였다. 택시에서 내리면서 한국인 망명객 택시기사에게 그 형이 한 마디를 던진다.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형제를 각기 다른 집에 입양 보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국은 지금도 형제를 다른 집에 입양 보내는데 별다른 주저를 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2012년 입양인들의 노력으로 역사적인 입양 특례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입양인 당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법안을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결실을 보았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날, 나는 당시 장관에게 들고 가

서 대통령 앞에서 읽으라고 한 장을 쥐여 주었다. ‘대한민국 법제 역사상 처음으로 아동의 입양을 법원이 결정하는 법원허가제가 법제화되었다. 국가의 아동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그러나 법 개정 한번으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기에는 이 역사의 뿌리는 너무나 깊고 컸다. 이 법 개정은 문제를 밀어 넣고 덮어두기만 했던 카펫을 들어내는 역할까지는 했다고 본다. 현실을 직면하고 제대로 된 개혁을 해 나가는 진짜 어려운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IV. 우리의 현실

1. 입양은 사적자치라는 통념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1조의 (a)

2012년 한국 법제사상 최초로 아동의 입양을 법원이 최종 결정하는 아동 입양의 가정법원 허가제가 민법과 입양특례법에 도입되었다. 이는 이제 한국에서도 ‘사적입양’ (private adoption)은 불법이라는 의미이다. 사적입양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인간은 어머니의 몸을 통해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당기간 그 부모와 가족에 생존이 달려있고 절대적으로 의존적이다. 필요한 시기에 공적 개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존재 자체가 사적 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 사적 입양은 극단적으로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누군가에게 쥐버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미 국제규범에서는 1960년대부터 사적 입양은 금지되었다. 1989년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이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 제21조 (a)에 의해 아동의 입양은 국가 기관에 의해 (주로 사법기관, 즉 법원)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은 입양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조항을 유보한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유보란 협약에 가입하면서 이 조항은 지키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법적 의사표시이다. 1991년 말 노태우 정권은 해

가 가기 전에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이라는 타이틀을 놓치지 않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 그야말로 기계적인 전문성을 발휘한 정부는 후안무치하게도 협약의 근본적인 원칙들을 유보한 채, 국회 비준동의도 없이, 따라서 어떠한 이행 입법도 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이 협약에 비준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준을 받아준 유엔은 책임이 없을까? 유엔에도 이에 대한 비판이 빗발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비판에서조차 빗겨나 있었다. 그토록 이례적인 유보를 주목한 회원국도, 학자도, 전문가도 없었다. 2017년 한국은 또 그렇게 이 유보를 슬그머니 종이 한 장으로 철회했다. 이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한국의 법제는 아직 이 21조의 (a)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991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대로 된 배움이나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2012년 법 개정 이후 실제로 한국의 가정법원에서 아동의 입양에 대한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또 수 년이 필요했다. 판사들이라고 해서 한국 역사상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재판을 해 낼 수 있는 능력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법 개정을 주도한 정부 부처의 실무 책임자였기에 가정법원 판사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잘 알고 있고, 따라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전해 들은 한 중견 판사의 말을 잊을 수 없다.

‘입양은 사적 자치인데 거기에 법원이 왜 개입하는가?’

이 말에 대한 반박은 이 글 전체에 있기 때문에 따로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굳이 이 말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이 화석이 되어서 박물관에 있어야 할 법제가 아직도 우리를 공기처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머릿 속에는 어디에서라도 튀어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생각이기에 그렇다. 베이비박스 현상이 그렇고, 국제입양은 우선 미담으로 다루고 보는 미디어가 그렇고, 아직도 수많은 아동을 고아원에 수용하는 제도를 방치하는 책임자들과 이를 방관하는 전문가 집단이 그렇다. 국제규범은 고아원이 존재하는 사실 자체가 아동의 권리 침해로 보고 있는데도 말이다.

2.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깔려있다.

이 말에서 ‘선의’는 ‘due process’와 대비되는 말이다. due process는 영미법적 전통을 가진 법제에서 ‘justice’와 같은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justice를 실체법에 규정할 수 없으니, 케이스가 달라도 justice를 찾아가는 공통의 절차를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나는 이 말을 ‘적법절차’로 표현하고자 한다. ‘법적 절차’와 ‘적법 절차’는 다르다. 정의롭지 않은 법에 규정된 절차는 적법절차라고 할 수 없다. 그 법적 절차 역시 due process의 검증 대상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하물며 법적 절차도 아닌, 사인, 혹은 사적인 주체의 ‘선의’에 근본적인 인권 사안을 맡겨 놓았다면, 그 법과 제도 자체가 위헌이고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선의’에 맡겨져서 결국은 ‘착취’와 ‘학대’에 이르게 하는 불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구호와 자선의 영역에서 흔히 벌어지는 참사이다. AP 통신에서는 한국의 국제입양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아동들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도했다.

대한민국의 국제입양 법제의 희생자이면서 소송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대표적인 당사자 아담 크랩서가 2019년 초에 국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이런 이유로 의의가 있다. 이 소송은 단순히 개인의 피해 배상이 아니라, 국가 폭력과 법제에 의해 제도화된 차별과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회복지 체계는 사인의 선의에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맡겨놓는 제도화 기능을 하고 있다. 70~80년대 서유럽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복지국가 welfare state라는 논리는 국가가 개인에게 단순히 돈을 준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맡겨져 왔던 관계, 특히 가족관계에서 여성과 아동으로 대표되는 약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어디까지 어떻게 어떤 근거로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다. 이를 근거로 개인에게 금전적인 지원도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 정부가 새로이 도입했다는 ‘아동수당’은 부모에게 주는 ‘양육수당’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 한국 법제는 아직 아동을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로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그 아동의 권리를 대신 판단하고 행사하는 국가의 존재도 없는 공백 상태이다. 그렇다면, 단순히 재정을 이용해서 돈을 주는 이 허망한 ‘아동수당’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일까? 이 사안은 ‘화석이 된 법제’에 더해서 ‘법적 공백’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아동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을 비준했고, 헌법에 의하면 정부가 비준한 국제법은 국내법적 효력을 지닌다. 협약을 형식적으로 비준했으나, 실질적으로 그 협약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국내법적 이행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 이는 ‘공백’이라고 불러야 한다.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3. 아동 최선의 이익 (Best Interests of the Child)이라는 공허한 법리

우리가 가져보지 못한 아동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법제가 과연 무엇인가? 아동의 권리는 어느 나라에서나 어려운 과제였다. 유엔 인권논의의 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권리의 주체이면서도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소위 권리행사 능력이라는 장애물에 부딪치면서

이 권리 주체성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미뤄졌다. 1948년 유엔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이 결의되었고, 이후 수많은 국제인권규범이 협약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졌다. 하지만,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까지 기다려야 했다. 아동권리협약은 폴란드가 주도적으로 초안을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한 이후, 문안을 논의하는데 10년이 걸렸다.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아동권리에 대한 법리의 전문가들이 유엔에 모여들었고, 워킹그룹이 기한을 정해 놓지 않고 논의를 이어갔다. 이렇게 성립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가장 빠른 시일내에 가장 많은 회원국이 가입한 인권 협약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역시 아동의 권리는 인류가 동의하는 지고지순한 가치라서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하고 위안을 받고 싶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와는 거리가 멀다. 유엔은 매우 폭넓은 유보를 허용했다. 아동의 권리는 가족 법제와 얽히고 설켜있다. 아무리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이라고 해도, 전통성이 가장 강한 법제인 가족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공적인 영역이 개입하는 아동권리의 개념에 있어서는 이 협약이 앞서나가는 경우가 있었다. 10년 동안 논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막상 서명과 비준이라는 가입 절차가 회원국들 앞에 놓였을 때 그리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유엔과 회원국들간의 타협점이 바로 유보를 통해 가입을 부담스럽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유엔은 명분을 얻었고, 가입국들은 아동권리를 무시하는 정부라는 비난은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은 연성법 수준에 머무르는 종이로 만든 호랑이 같은 강제력 없는 규범이 되고 말았다. 유엔 회원국 전체라고 할만한 196개국이 가입한 협약에 유일한 비가입국은 미국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협약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다. 이 협약은 적어도 아동의 권리가 레토릭이 아니라, 법리이고, 법정에서 판사에 의해 선언되는 법적 원칙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해주는 위대한 교재이기 때문이다. 이 협약을 떠받치는 4개의 기둥,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비차별 원칙, 생존과 발달의 권리, 그리고 아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그 중에 제일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다. 한국 정부는 보편적 정례검토(UPR)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에서 한국 법제에 의해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 이행되고 있는지 물으면 그렇다고 답변한다. 이 답변은 무지에 의한 거짓이라고 본다. 그렇다는 답변의 근거는 아동복지법과 민법 등 관련 법률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든지 하는 선언적 규정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든다. 그러나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은 실체법이라기보다는 절차법적 원칙이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개개인 아동에게 벌어지는 개별 케이스에서 일일이 둘러싼 상황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실체법에 그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단할 수 있는 적법 절차를 법제에 마련하는 것. 이러한 절차적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법에 이런 법제가 구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법에는 있는가? 그렇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아동을 대리하는 재판, 부모에 대한 아동권리 담당 정부부처의 개입, 이런 절차가 가능한 법제가 있고, 그렇지 못한 법제가 있다. 특히 가족법이 중요하다. 법은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인간은 탄생과 동시에 부모와 가족의 보호에 놓이고, 일차적 아동 최선의 이익은 부모가 결정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것이 인류가 경험적으로 증명해 온 정의이다. 다만, 아동의 근본적 권리에 해당하는 사안은 부모도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부모의 신념에 근거한 수혈거부 혹은 아동의 국적포기를 부모가 결정한다든지 하는 사안이다. 부모가 이혼할 경우 양육자의 결정, 부모의 양육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후견인의 지정도 주요 사안이다. 이러한 최선의 이익에 대한 결정은 부모와 가족을 넘어 국가가 사법절차, 즉 법원 절차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 실현되는 한 예이다. 영미법

계에서는 이를 ‘아동의 근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사안의 결정 관할권은 가정법원이 가진다’고 규정한다.

앞서 얘기한 ‘사적 입양’은 그 입양 결정에 대한 권한을 부모 간에 혹은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인 도움을 구할 길 없는 어린 미혼모나 빈곤·위기 가정과 입양기관의 장 사이의 사적 계약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의미이다. 심지어 이들 고아원장이나 입양기관장이, 아동의 가족관계를 삭제한 채 고아로 등록할 수 있는 권한까지 법에 명시했다. 사적 주체에게 한 인간에 대한 절대적 권한이 주어진 셈이다. 이런 법이 인권침해적인 위헌적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면 도 대체 어떤 법이 그러할까? 앞서 언급한 추방 입양인 아담 크랩서의 국가와 입양기관 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의 의견에도 이 내용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다.

한국 법제에서는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이 없는 공백 상태이지만, 이 원칙만큼 한국사회에서 사적 기관에 의해 자선과 선의로 남용되고 오용되는 레토릭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을 부모에게서 떼어내어 고아원에 맡기는 것도, 베이비박스에 데려다 놓는 것도, 입양기관에 맡겨 가짜 고아로 만들어 외국으로 송출하는 것도, 모두 아동을 위한 것이고, 그 아동의 최선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되었다. 사실은 다른 주체에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1993 헤이그국제 아동입양협약 전문에는 이 협약의 핵심이 국제입양으로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018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아동의 국제입양은 아동 1인당 입양절차 대행 수수료로 3만달러 이상이 양부모로부터 입양기관으로 지불된다. 한국이 국제입양을 67년간 해오는 동안 이 금액은 연간 한국의 1인당 GDP 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된다.

V. 당사자들이 돌아온다.

김대중 정부 이후 국제입양인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 재외동포 지위, 국적 회복, 모국 방문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대규모 국제입양인 행사가 한국에서 열리는 현장에 아동입양을 담당하는 정부 당국자가 참석해서 입양인들에게 했다는 말이다.

“여러분은 잘 살라고 내 보내 놓았더니, 왜 이렇게들 되돌아오고 그러냐”

이게 핵심이다. 한국은 이들이 되돌아 올 지 몰랐다. 67년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수백에서 수천명의 아동을 송출한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국가이다. 전체 국제입양 송출 아동 수에 있어서 어느 국가도 따라 오기 힘든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장, 최대 송출국이다. 이런 인지구조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신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정부에 ‘국제입양’은 아동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아무리 얘기해 봐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국제입양에 대한 진실과 정의와 회복을 요구하는 입양인 당사자들의 운동은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국제규범을 외쳐봐야, 한국 안으로 들어오면, 이러한 신념과 통념의 지배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한국의 입양과 아동권리와 관련된 법과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회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기대하기 어렵다. 입양 기관과 그들을 둘러싼 세력에 의해 좌우되고, 그 세력에는 미국의 영향력도 포함된다. 권리 당사자들은 언어장벽, 문화·사회적 생소함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한국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특단의 조치, 뭔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 2012년에 이미 이들은 법 개정 작업을 완수하였지만, 이 조차 특단의 조치가 되지는 못했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족법제와 아동보호법제의 정비는 매우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는 과제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 최우선 과제로 ‘정체성을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양인 개개인의 입양경험과 그들의 욕구는 제각각이다. 그러나 공통적인 요구는 이들의 입양 당시에 입양기관과 국가에 의해 훼손된 정체성을 알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다. 가칭 ‘국제입양인 정체성을 알 권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수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민간 입양기관과 고아원에서 소장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만명에 달하는 국제입양인의 신분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공적 기록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떤 자격과 요건을 갖추었을 때, 어떤 판단기준에 의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결정 주체에 의해 제공할 것인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결단해야 한다. 근본적 인권 보장을 입양기관에 떠맡기고 있었던 국가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사회와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전홍기혜 · 이경은 · 제인 정 트렌카. 2019. 『아이들 피는 나라: 한국의 국제입양 실태에 관한 보고서』. 파주: 오월의봄.